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박영수

편집 : 문화공보관

전화 : 72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: 725-6090

제 860 호

1981. 9. 24

시보

차 례

◎ 조	배		
제 1537 호	(시교육위원회)	: 서울특별시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	3
제 1538 호		: 서울특별시강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	3
◎ 고	시		
제 325 호		: 도시계획시설(시장, 도로) 변경결정지적승인	7
제 337 호		: 도시계획사업(공용와청사) 시행허가변경	7
제 338 호		: 도시계획시설(학교) 지적승인	8
제 339 호		: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 실효고시	8
제 340 호		: 도시계획사업(시장) 시행허가변경	9
제 341 호		: 마포로주변구역제 1 지구제 7 획지재개발사업시행인가 및재개발조합설립인가	10
제 342 호		: 재개발사업지구사업완료	10
제 343 호		: 도시계획사업(학교) 시행허가고시	19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제 344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고시	23
제 345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고시	27
제 346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고시	29
제 347 호 :	도시계획시설 (수도) 변경결정허가지적승인	31
제 348 호 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	31
제 349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	32
제 350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	33

공 고

제 248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준공	35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사 랑

조 **례**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"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"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이창갑
1981년 9월 21일

○서울특별시조례제 1537 호

서울특별시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도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, 제 2 조 및 제 3 조의 제목을 각각 " (목적) ", " (명칭및위치) " 및 " (열람료) "로 한다.

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4 조 (관장등) ①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 다만, 강남도서관과 도봉도서관의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사서관으로 보한다.

②관장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의 명을 받아 관무를 장리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

③관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별표중 강남도서관과 도봉도서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강남도서관	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163번지 29호
도봉도서관	서울특별시도봉구미아동 127번지 5호
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강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
1981년 9월 23일

○서울특별시조례제 1538 호

서울특별시강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

서울특별시 강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(이하 " 법 " 이라한다) 제 3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동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

<p>서울특별시 강동토지구획정리사업 (이하 "사업"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</p> <p>제 3조 (시행지구 및 면적)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, 둔촌동 각일부지역 약 110,000평을 대상으로 한다.</p> <p>제 4조 (사업의 범위)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, 분할 기타의 구획변경,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, 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(지장물 정리포함) 및 채비지의 관리 처분 기타 부수사업으로 한다.</p> <p>제 5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사업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청내에 둔다.</p> <p>제 6조 (사업기간) 이사업은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수 있다.</p> <p>제 7조 (회계에 관한사항)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하며,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</p> <p>제 8조 (광고) 광고는 관보 및 서울특별시보에 기재하며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</p>	<p>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서면통지한다.</p> <p>제 9조 (사업비)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채비지 매각수입금, 보조금,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제 10조 (종전토지)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필지의 면적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입야대장 면적에 의한다. 다만, 다음각호에 의하여 별도 면적을 정할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행인가일 이후에 분할,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대장상의 면적 2. 서울특별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실측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면적 <p>제 11조 (토지등의 평가) ①정리전 후의 토지 각 필지의 가격을 평정하고자 할때에는 공인평가기관 (한국감정원, 토지평가사, 공인감정사)이 평가한 금액을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.</p> <p>②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정가격을 부파하지 아니할수 있다.</p>
---	--

제 12조 (환지계획의기준) ①환지계획은 법제 48조 내지 제 51조 및 제 53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제 11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유허가 건물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수 있다.

③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위치에 환지불 지정할수 없을때에는 종전의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위치로 환지 지정할수 있다.

④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 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 하거나 감보하지 아니할수 있다.

제 13조 (특별지의 환지) ①종전토지의 지적이 근소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토지는 환지불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수 있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증환지 할수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저속되는 경우에는 비

환지할수 있다.

②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토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환지할수 있다.

제 14조 (환지에정지 지정) 법 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그 지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 15조 (각환지 예정지 지정) 공공시설의 설치 및 기존 건물이나 공작물의 이전 또는 법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행위 허가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 14조의 환지에정지 지정전에 가환지를 지정할수 있다.

제 16조 (정산) ①환지처분의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정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평가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②정산금은 환지처분후 징수 또는 교부한다. 다만,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이전에 정산금을 교부할수 있으며 정산금의 징수 및 교부할 때에는 따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이한다.

제 17조 (토지의 관리) 시장이 환지에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

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환지에 정지를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18 조 (채비지 관리 및 처분) 사업비에 충당될 채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 및 아파트의 유치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수 있으며, 시장은 이를 관리하고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19 조 (공공용지의 부담)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 각 필지의 부담면적은 사업시행전후 토지면적의 평정가격 및 계획도로의 폭원을 기준으로 하며 시행자가 정한 일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.

제 20 조 (환지처분) 환지처분은 공사완료 보고후 지체없이 하여야하며, 다만 일부 완료지역 또는 공사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지역에 대하여 환지처분할수 있다.

제 21 조 (등기완료후의 통지) 시장은 법제 65조에 의한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환지설명서의 사본

을 첨부하여 관계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22 조 (대리인신고) 당해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이의신청 기타 사업시행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23 조 (이동신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체없이 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1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변경된 때
- 2. 환지처분전에 지방배법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자할 때

제 24 조 (증명및분할) ①시장은 사업기간중 환지에 대한 제증명서를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수 있다. ②종전토지와 환지계획의 변경 및 분할은 공공계획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.

제 25 조 (사업비의 목적의 사용금지) 시행자는 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타목적으로 전용 또는 사용할수 없으며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지구내 편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한다.

제 26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25 호

도시계획시설(시장, 도로)
변경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시장, 도로)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

제 12 조, 13 조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원한 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리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낸다.

1981. 9. 7.

서울특별시청

가. 도시계획시설(시장)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

구분	시설명	시장명칭	위 치	면 적	비 고
기정	소매시장	홍제시장	서대문구홍제동 307-3일대	4,019.9㎡(1,216평)	
변경	"	"	" " 306-2일대	4,551.6㎡ (1,376.71평)	확장: 531.7㎡ (160.91평)

나.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
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장	기 점	총 길	비 고
기정	소도	2	8m	460m	서대문구홍제동 308-222	서대문구홍제동 306-14	
변경	"	"	"	"	"	"	홍제시장유문 166미터 위치 변경 및 확장

※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37 호

도시계획사업(공유외청사)
시행허가변경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80 호 (78.3.7) 로 도시계획사업(공유외청사)

시행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의 원한 위임·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9. 22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: 강남구 서초동 산 185 부근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 사업 (공공의정사) 시행허가 변경

다. 사업시행면적: 100,400㎡

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, 성명: 법원행정처장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당초 - 1978.3 - 1981.12.31
변경 - 1978.3 - 1985.12.31

바.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: 별첨(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8 호

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09호 (81.4.7) 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을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의 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9. 22.

서울특별시장

○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중학교	구로구신도림동 303-6일대	12,893㎡ (3,900평)	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9 호

도시계획시설 (전기공급설비) 실효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240호 (78.5.26) 로 결정된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4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호 (79.12.10)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실효되

었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9. 22.

서울특별시장

○ 시설 조서						
구분	시 설 명	위	치	면 적	비 고	
실 효	전기공급설비	종로구명륜동 2가 41의4부근		2,971.6㎡		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						
<p>㉠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0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 허가 변경</p> <p>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85 호 (80.11.24) 로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 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 변경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변경 고시 한다.</p> <p>2. 관제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>1981. 9. 22.</p> <p>서울특별시 장</p>			<p>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선동구 성내동 428-2</p> <p>나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 명칭 : 문촌상가 (소매시장)</p> <p>다. 사업의 규모 및 면적</p> <p>1) 당초 : 규모 (지적) : 1,003 평 3층 건축면적 : 1,776.39 평</p> <p>2) 변경 : 규모 (지적) : 1,003 평 3층 건축면적 : 1,782.496 평</p> <p>라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</p> <p>1) 당초 : 착수년월일 : 80.11.27 준공예정일 : 81. 4.30</p> <p>2) 변경 : 착수년월일 : 80.11.27 준공예정일 : 82. 9.30</p> <p>마. 사업시행자의 주소, 성명</p> <p>1) 당초 주소 : 중구 초동 18-8 성명 : 문촌상가(주) 대표 김길상</p> <p>2) 변경 주소 : 선동구 성내동 428-2 성명 : 문촌상가(주) 대표 이용두 장인자</p>			
바. 사용할 토지내역						
구분	소	제	지	지 적	소 유 자	비 고
당 초	서울시 천호토지구획정리지구 886 구획			1,003.3 평	문촌상가(주)	
변 경	강동구 성내동 428-2			1,003.3 평		관지확정

사. 위치 및 계획평면도 : 별첨 (도면생략)

아. 공사실제도면 : 별첨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41 호

마포로주변구역제 1지구제 7획지재개발사업
시행인가및 재개발조합설립인가

1. 건설부고시 제 345 호 (79.9.21) 로 구역지정되고, 동부고시 제 329 호 (81.8.27) 로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된 마포로주변구역 제 1 지구 제 7 획지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7 조 규정에 의하니 재개발사업시행 및 재개발조합 설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 하였기에 도시재개발법 제 1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건축국 재개발1과 및 마포로주변구역 제 1 지구 제 7 획지 재개발조합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시킨다.
(관계도서 생략)

1981. 9. 23.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○ 시행 개요

가. 재개발사업의 명칭
마포로주변구역 제 1 지구 제 7 획지 재개발사업

나. 시행구역 및 면적

○ 시행구역 : 마포구 도화동 43-1 번지의 6 필지

○ 시행면적 : 5,447.3 ㎡

○ 대지면적 : 4,302.5 ㎡

○ 공공용지 부담면적 : 1,144.8 ㎡

다. 건축계획 (규모 및 용도는 건축허가서로 확정함)

○ 건축면적 : 1,718.2 ㎡ (건폐율 40%)

○ 연 면 적 : 34,960.5 ㎡ (용적율 666%)

○ 주 용 도 : 업무, 공동주택, 판매 시설

○ 층 수 : 지상 15 층, 지하 4 층
라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(조합)

마. 시행기간 : 1981.9.23 - 1983.9.30

바. 시행인가년월일 : 1981.9.23

사.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마포구 도화동 43-1 번지
마포로주변구역 제 1 지구 제 7 획지 재개발조합 (대표 한계원)

아. 정관 (별첨)

자. 사업시행 계획서 (별첨)

차. 수유 또는 사용할 토지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(별첨)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 외의 권리 명세							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 적		소 유 권 주 소	자 성 명
				지 분	시행면적		
1	마포구도화동 43-1	43-1	대	15.58	4.63	강남구청답동 6 단지 7	이범영
2	"	"	"	15.58	4.63	마포구도화동 33-5	은만기
3	"	"	"	15.50	4.61	" 신수동 91-25	김상운
4	"	"	"	15.58	4.63	" 도화동 33-5	양승민
5	"	"	"	15.50	4.61	" " 43-1	김호교
6	"	"	"	15.50	4.61	" " 43-1	김영복
7	"	"	"	15.58	4.63	" " 33-5	장동환
8	"	"	"	15.58	4.63	" " 33-5	신학식
9	"	"	"	15.58	4.63	" " 33-5	신정환
10	"	"	"	15.58	4.63	" " 33-5	조명구
11	"	"	"	15.58	4.63	" " 33-5	정종준
12	"	"	"	15.58	4.63	" " 44-8	이성숙
13	"	"	"	15.50	4.61	부산시서구동해선동 2가 10-25	윤달호
14	"	"	"	9.35	2.78	마포구도화동 33-5	김인숙
15	"	"	"	9.35	2.78	" " 33-5	김복래
16	"	"	"	9.35	2.78	" " 33-5	박창식
17	"	"	"	21.7	6.45	" " 33-5	박주상
18	"	"	"	15.50	4.61	" 선동덕동 133-50	김명환
19	"	"	"	9.35	2.78	" 용강동 494-25	김명호
20	"	"	"	9.35	2.78	" 도화동 33-5	김형태
21	"	"	"	9.35	2.78	" 용강동 30-1	이종성
22	"	"	"	9.35	2.78	" 도화동 33-5	김현용
23	"	"	"	9.35	2.78	" " 33-5	김이현
24	"	"	"	9.35	2.78	" " 33-5	노영선
25	"	"	"	9.30	2.76	" " 33-5	홍극유
26	"	"	"	9.35	2.78	" " 33-5	김용기
27	"	"	"	9.30	2.76	" " 417-50	오창실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	소유권자	
				지분	시행면적	주소	성명
28	마포구도화동 43-1	43-1	대	9.35	2.78	마포구도화동 33-5	손덕진
29	"	"	"	9.30	2.76	" " 33-5	차석보
30	"	"	"	9.30	2.76	" " 33-5	지영봉
31	"	"	"	9.35	2.78	" 아현동 488-75	황근욱
32	"	"	"	9.35	2.78	" 도화동 33-5	김준경
33	"	"	"	9.35	2.78	" " 43-1	김교순
34	"	"	"	9.35	2.78	" " 33-5	홍영자
35	"	"	"	9.35	2.78	" " 33-5	홍봉선
36	"	"	"	9.35	2.78	" " 33-5	홍학선
37	"	"	"	15.63	4.65	" 용강동 35	민인기
38	"	"	"	9.30	2.76	" 염리동 85-20	김종길
39	"	"	"	9.31	2.77	" 도화동 33-5	박기후
40	"	"	"	18.6	5.53	광주시서구문안동 109-3	박동식
						진남진도진도읍흥외리 831	박동진
41	"	"	"	9.35	2.78	마포구도화동 33-5	황연우
42	"	"	"	9.30	2.76	안동군일직면당호동 465	배상곤
43	"	"	"	9.35	2.78	영등포구개봉동원봉아파트 15동 401호	조남일
44	"	"	"	9.35	2.78	강서구화곡동 128-7	전영길
45	"	"	"	9.31	2.77	" " 33-5	김득준
46	"	"	"	9.35	2.78	" " 33-5	박동권
47	"	"	"	18.61	5.53	마포구도화동 43-1	김산길
48	"	"	"	18.62	5.54	" " 33-5	한계원
49	"	"	"	9.35	2.78	" " 33-5	김진영
50	"	"	"	9.35	2.78	" " 33-5	조봉환
51	"	"	"	20.26	26.02	영등포구영등포동 618	정영환
52	"	"	"	28.05	8.34	마포구도화동 43-1	김기진
53	"	"	"	62.11	18.47	" " 33-5	이범대
54	"	"	"	11.85	3.52	" " 33-5	유성함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 적		소 유 권 자	
				시 분	시행면적	주 소	성 명
55	마포구도화동 43-1	43-1	대	35.69	10.61	마포구신수동 63-131	이준용
56	"	"	"	15.58	4.63	마포구도화동 33-5	최옥삼
57	"	"	"	19.48	5.79	" " 33-5	윤태형
58	"	"	"	13.96	4.15	" " 33-5	박덕용
59	"	"	"	10.00	2.97	" " 33-5	문호진
60	"	"	"	15.50	4.61	" " 33-5	배길찬
61	"	"	"	24.93	7.34	강동구잠실2동아파트 231동 506호	차수술
62	"	"	"	9.35	2.78	마포구도화동 33-5	추연옥
63	"	"	"	9.35	2.78	" " 33-5	이순림
64	"	"	"	9.35	2.78	" " 43-1	김문한
65	"	"	"	7.35	2.78	" " 43-1	김송자
66	"	"	"	9.35	2.78	마포구용강동 494-455	문점남
67	"	"	"	9.35	2.78	마포구도화동 33-5	강은하
68	"	"	"	9.35	2.78	" " 33-5	오근철
69	"	"	"	9.35	2.78	" " 33-5	홍학공
70	"	"	"	17.11	5.09	" " 33-5	배병호
71	"	"	"	9.30	2.76	" " 33-5	임경필
72	"	"	"	9.35	2.78	마포구신수동 93-131	이기관
73	"	"	"	9.35	2.78	마포구도화동 33-5	이기복
74	"	"	"	9.35	2.78	" " 33-5	최현철
75	"	"	"	54.32	16.16	안양시석수동산 68-1	홍백희
76	"	"	"	9.35	2.78	마포구도화동 33-5	김기덕
77	"	"	"	9.35	2.78	" " 33-5	김갑연
78	"	"	"	9.35	2.78	" " 33-5	이근홍
79	"	"	"	9.35	2.76	" " 33-5	김현수
80	"	"	"	9.35	2.78	" " 33-5	이춘봉
81	"	"	"	96.22	28.62	마포구대흥동 76	김봉주
82	"	"	"	313.289	93.17	마포구마포동 33-9	지성경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	소유권		자 성명
				지분	시행면적	수	소	
83	마포구도화동 43-1	43-1	대	99.739	29.66	영등포구여의도동 1-45 시범아파트 3동 106호	윤태성	윤수자 외 1인
84	"	43-1	"	74.02	22.02	마포구토정동 6-6 마포구대흥동 443	김전용	장병기
85	"	"	"	644.151	191.6	마포구도화동 44-9 영등포구여의도동 1-45	윤태성	
86	"	"	"	73.93	21.99	시범아파트 3동 106호		이흥원
87	"	"	"	154.62	45.99	강남구잠실 3동 361동 5/5	김문배 외 1인	김문배 외 1인
88	"	"	"	36.78	10.94	홍로구연지동 136-46	강신덕	
89	"	"	"	77.06	22.92	마포구도화동 50-1	서국철	
	"	"	"	361.101	107.4	" " 33-5	서울특별시	
	"	"	"	752.95	224.25	마포구도화동 43-1	재개발조합	
	"	44-15	"	79.9	79.9	" 44-15	김남섭	
	"	44-8	"	53.8	53.8	" 44-18	신영철	
	"	44-7	"	50.9	50.9	" 44-7	박호준	
	"	44-5	"	70.3	70.3	" 44-5	박금준	
	"	44-4	"	75	75	" 44-4	최갑근	
	"	26-6	도로	271.4	187.6	"	이창일	
90	마포구도화동 43-1	43-1	대	96.22	28.62	마포구대흥동 76	서울시	김봉주
91	"	"	"	313.289	93.18	" 마포동 33-9	지성경	
92	"	50-1	50-1	99.739	29.66	" 토정동 6-6	윤수자 외 1인	
93	"	"	"			" 대흥동 443	김전용	
94	"	45-1	45-1	74.02	22.02	" 도화동 44-9	장병기	
95	"	50-1	50-1	644.151	191.6	영등포구여의도동 1-45 시범아파트 3-106	윤태성	
96	"	45-1	45-1	73.93	21.99	강남구잠실 3동 361동 515	이흥원	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	소유권자	
				지분	시행면적	주소	성명
97	마포구도화동 45-1	45-1	대	154.62	45.99	종로구연지동 136-46 : 장로교서울교회재단	장로교
98	" 50-1	50-1	"	36.78	10.94	마포구도화동 50-1	강신덕
99	" "	"	"	77.06	22.92	"	시국철
100	" 43-1	43-1	"	361.101	107.4	"	서울시민합
101	" "	"	"	752.95	224.25	" 43-1	시민합
102	" 44-15	44-15	"		79.9	" 44-15	김남섭
103	" 44-8	44-8	"		53.8	" 44-8	신영철
104	" 44-7	44-7	"		50.9	" 44-7	신영철
105	" 44-5	44-5	"		70.3	" 44-5	신영철
106	" 44-4	44-4	"		75	" 44-4	김상일
107	" 26-6	26-6	"	271.4	187.6	" 26-6	서울시

건물명세서

번호	소재지	지번	구 조	면적	소유자	비고
1	마포구 도화동	43-1	목조세멘와즙	16.76경	이남연	
2	"	"	"	7.0	윤민기	
3	"	"	"	14.07	김상운	
4	"	"	"	8.0	양승환	
5	"	"	"	8.0	정호교	
6	"	"	"	5.0	김형백	
7	"	"	" 2층점포	6.0	이지현	
8	"	"	"	7.95	김학실	
9	"	"	"	14.0	신경환	
10	"	"	"	14.13	조명구	
11	"	"	"	14.8	정동순	
12	"	"	"	9.0	이정숙	
13	"	"	"	15.16	윤영희	
14	"	"	벽돌조세멘와즙	6.0	양인수	

37-16 제 860 호 시 보 1981. 9.24

번호	소재지	지번	구 조	진 평	소유자	비 고
15	마포구 도화동	43-1	목조세멘외증	6.0	최갑배	
16	"	"	"	6.0	박창식	
17	"	"	"	12.0	박주상	
18	"	"	"	8.0	김명환	
19	"	"	"	6.0	이명호	
20	"	"	목조 2 층	6.0	정영태	
21	"	"	"	6.0	이종성	
22	"	"	목조세멘외증	6.0	김현용	
23	"	"	"	5.66	김이현	
24	"	"	"	6.0	노용선	
25	"	"	" 2 층	5.66	홍극유	
26	"	"	"	6.0	김용기	
27	"	"	"	5.89	오상철	
28	"	"	"	6.0	손덕진	
29	"	"	"	6.0	차석보	
30	"	"	"	6.31	지영봉	
31	"	"	"	6.0	황근욱	
32	"	"	" 2 층	6.0	김준경	
33	"	"	"	6.33	김교순	
34	"	"	"	6.1	홍영자	
35	"	"	"	5.67	홍봉선	
36	"	"	"	9.7	홍학선	
37	"	"	목조세멘외증2층점포	17.13	민인기	
38	"	"	"		김봉길	
39	"	"	" 2 층점포	6.0	박기후	
40	"	"	연와조평옥 2 층 점 포	22.15	박동식	
41	"	"	목조세멘외증 2 층 점 포	6.0	황연욱	
42	"	"	세멘부목외증2층점포	11.58	배상곤	

번호	소재지	지번	구 조	면적	소유자	비고
43	마포구 도화동	43-1	목조세멘와즙2층집포	20.65	조남일	
44	"	"	" "	6.0	전여길	
45	"	"	" "	6.66	김종우	
46	"	"	" "	14.77	박동권	
47	"	"	" "	6.0	김산길	
48	"	"	" "	17.27	한계일	
49	"	"	" "	6.1	김진명	
50	"	"	" "	6.0	조용환	
51	"	"	목조와즙 2층집포	16.0	정영환	
52	"	"	" "	7.0	신기진	
53	"	"	" "	12.84	홍학용	
54	"	"	세멘와즙	13.33	이순용	
55	"	"	목조세멘와즙	14.1	차수울	
56	"	"	" 집포 12평	37.2	이범대	
57	"	"	" "	6.3	이순영	
58	"	"	" "	13.16	박덕용	
59	"	"	" "	15.55	문도현	
60	"	"	" "	12.0	배영환	
61	"	"	" "	14.33	서옥대	
62	"	"	" "	6.0	수영숙	
63	"	"	연와조평옥 2층	22.61	유대현	
64	"	"	목조세멘와즙	6.0	김분경	
65	"	"	" "	7.3	전승자	
66	"	"	" "	6.0	문정숙	
67	"	"	" "	6.1	장은하	
68	"	"	" "	5.7	오근철	
69	"	"	" "	6.33	유성상	
70	"	"	세멘벽돌조평옥 집포	15.56	배병호	
71	"	"	목조세멘와즙 2층집포	7.11	임경월	
72	"	"	" "	14.76	방동균	

37-18 제 860호 시 보 1981. 9.24

번호	소재지	지번	구 조	진 평	소유자	비 고
73	마포구 도화동	43-1	목조세멘트와즙2층집포	7.0	이기백	
74	"	"	"	7.76	최현달	
75	"	"	세멘트벽돌와즙	20.73	강유모	
76	"	"	목조세멘트와즙	6.9	최형근	
77	"	"	"	11.68	박삼조	
78	"	"	"	6.9	구본영	
79	"	"	"	7.0	김기덕	
80	"	"	"	7.47	박육순	
81	"	"	세멘트부속세멘트와즙	7.38	이근홍	
82	"	"	"	8.43	이춘봉	
83	"	"	"	6.9	김현수	
84	"	44-4	연와조명옥	10.15	이창일	
85	"	26-6	목조세멘트와즙	6.0	강선희	
86	"	"	"	6.0	김형한	
87	"	"	"	6.0	정명순	
88	"	"	"	6.0	이창순	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2 호

재개발사업지구사업완료

1.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지구
 아현 2, 전농 1, 후암 1, 옥인, 홍재 6
 한남 1, 상도 8, 7개 지구의 재개
 발사업이 완료 되었기 도시재개발법
 제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

확정 처분하고 이물 고사한다.

2. 환지확정조서는 서울특별시 건축
 국 재개발 2과 및 관할구청 시민
 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
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9.23

서울특별시 장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343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사업시행허가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233 호 (81.6.26) 로 지적승인된 도봉구공농동 371-10 번지의 53 필지 토지에 대하여 화미국민학교신속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사업시행허가하고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도시정비과와 서울시교육위원회시설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9.24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

도봉구공농동 371-10 의 53 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

도시계획사업 화미국민학교신속

다. 사업의 규모 및 면적 :

11,769 ㎡ (3,560 병)

라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: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착공예정일 : 1981.12.15

준공예정일 : 1982.12.15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여의의 권리명세 (별첨)

사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

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(별첨)

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

학교명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화 미 국민 학교	도봉구 공농동	371-35	대	180.1 ㎡	도봉구공농동 381	한상현
		374- 1	도	996 중 932.5	서울특별시	
		388- 1	대	217.4	도봉구공농동 381	한상현
		7	"	195.6	"	"
		8	"	196.0	"	"
		9	"	196.6	"	"

37-20

제 860 호 시

보 1981. 9. 24

학교명	소재지	지 번	지목	지 적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		388-10	대	197.1	도봉구공농동 381	한상현
		-11	"	197.6	"	"
		-12	"	198.1	"	"
		-13	"	198.5	"	"
		-14	"	225.5	"	"
		-15	"	200.8	"	"
		-16	"	180.1	"	"
		-17	"	180.1	"	"
		-18	"	180.1	"	"
		-19	"	180.1	"	"
		-20	"	180.1	"	"
		-21	"	180.1	"	"
		-22	"	180.3	"	"
		-23	"	220	"	"
		-24	"	643.6	서울특별시	"
		-25	"	242.7	"	"
		-26	"	180.3	"	"
		371-10	"	184.3	도봉구공농동 381	한상현
		-12	"	172.6	"	"
		-13	"	172.6	"	"
		-14	"	172.6	"	"
		-15	"	172.6	"	"
		-16	"	172.6	"	"
		-17	"	172.6	"	"
		-18	"	184.3	"	"
		-19	"	723.4	"	"
		-20	"	178.1	"	"
		-21	"	175.3	"	"
		-22	"	175.3	"	"

제 860 호 시 보 1981. 9. 24 37-21

학교명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		371-23	대	175.3	도봉구공능동 381	한상현
		-24	"	175.3	"	"
		-25	"	175.3	"	"
		-26	"	175.3	"	"
		-27	"	176.3	"	"
		-28	"	193.7	"	"
		-29	"	177.4	"	"
		-30	"	177.4	"	"
		-31	"	177.4	"	"
		-32	"	177.4	"	"
		-33	"	177.4	"	"
		-34	"	177.4	"	"
		388-27	"	180.4	"	"
		-28	"	180.4	"	"
		-29	"	180.2	"	"
		-30	"	180.1	"	"
		-31	"	180.1	"	"
		-32	"	180.3	"	"
		-33	"	206.3	"	"
계		54 필		11,769 평 (3,560 평)		

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

학교명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
화미	도봉구	371-35	대	180.1	없 음
국민	공능동	374- 1	도	996 중 932.5	"
학교		388- 1	대	217.4	"
		7	"	195.6	"
		8	"	196.0	"

37-22

제 850 호 시

보 1981. 9.24

학교명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유자이외의관리명세
화 미 국 민 고 교	도봉구 공릉동	388- 9	대	196.6	없
		-10	"	197.1	"
		-11	"	197.6	"
		-12	"	198.1	"
		-13	"	198.5	"
		-14	"	225.5	"
		-15	"	200.8	"
		-16	"	180.1	"
		-17	"	180.1	"
		-18	"	180.1	"
		-19	"	180.1	"
		-20	"	180.1	"
		-21	"	180.1	"
		-22	"	180.3	"
		-23	"	220	"
		-24	"	643.6	"
		-25	"	242.7	"
		-26	"	180.3	"
		371-10	"	184.3	"
		-12	"	172.6	"
		-13	"	172.6	"
		-14	"	172.6	"
		-15	"	172.6	"
		-16	"	172.6	"
		-17	"	172.6	"
		-18	"	184.3	"
		-19	"	723.4	"
		-20	"	178.1	"
		-21	"	175.3	"
		-22	"	175.3	"

학교명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유자이외의권리명세
		371-23	대	175.3	없 음
		-24	"	175.3	"
		-25	"	175.3	"
		-26	"	175.3	"
		-27	"	175.3	"
		-28	"	193.7	"
		-29	"	177.4	"
		-30	"	177.4	"
		-31	"	177.4	"
		-32	"	177.4	"
		-33	"	177.4	"
		-34	"	177.4	"
		388-27	"	180.4	"
		-28	"	180.4	"
		-29	"	180.2	"
		-30	"	180.1	"
		-31	"	180.1	"
		-32	"	180.3	"
		-33	"	206.3	"
	계			11,769 (3,560평)	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344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3호(81.6.26)로 지적 승인된 당구 상계동 1168-4의 17필지 일대의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를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63호(79.12.10)

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사업시행 허가하고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농사실 및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9. 24

서울특별시청

<p>가. 사업시행지 : 도봉구 상계동 1168-4 외 17 필지</p> <p>나. 사업의종류및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간촌국민학교</p> <p>다. 사업의규모및면적 : 14,631 ㎡ (4,426 명)</p> <p>라. 사업시행자주소성명 :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</p>	<p>마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1) 착수년월일 : 1981.12.15 2) 준공년월일 : 1982.12.15</p> <p>바.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: (별첨)</p> <p>사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판제인의 주소, 성명 (별첨)</p>
--	---

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

학교명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유자이외의권리명세
간 촌 국 민 학 교	도봉구 상계동	1168-4	대	47	없 음
		1169-5	잡	32	
		1171-2	"	499	
		1174-2	"	2,632	
		1175-2	"	3,051	
		1176-1	"	3,402 중 2,862	
		-2	"	2,216	
		-3	"	977 중 953	
		-4	"	109	
		1177-2	대	518	
		-3	"	108	
		1178-6	"	2,166 중 345	
		-8	"	183	
		-10	"	473	
		1177-4	"	518	
		1173-3	잡	50	
1172-2	"	39			
1182-2	"	26			
합 계		18 필		14,631 (4,426 명)	

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						
학교명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용 자	
					주 소	성 명
간 손 국 민 학 교	도봉구 상계동	1168-4	대	47	학교법인	덕성학원
		1169-5	잡	32	"	"
		1171-2	"	499	필동 2 가 84-14	도 상 태
		1174-2	"	2,632	"	"
		1175-2	"	3,051	"	"
		1176-1	"	2,862	"	"
				(3,402 중)	"	"
		-2	"	2,216	"	"
		-3	"	977중 953	"	"
		-4	"	109	"	"
		1177-2	대	518	"	"
		-3	"	108	종로구안국동 37 학 교 법 인	덕성학원
		1178-6	"	2,166 중	"	"
				315	"	"
		-8	"	183	"	"
		-10	"	473	"	"
		1177-4	"	518	"	"
		1173-3	잡	50	필동 2 가 84-4	도 상 태
1172-2	"	39	"	"		
1182-2	"	26	"	"		
합 계	18 필			14,631	(4,426명)	

㉠ 서울특별시고시제 345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
시행허가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3 호 (81. 6.26) 로 지적 승인된 당구 수유동 551-27 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들 도시계획법 제 25 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사업 시행 허가하고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 및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9. 24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자 : 도봉구수유동 551-27 일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우이국민학교

다. 사업의 규모 및 면적 13,503 ㎡ (4,085 평)

라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1) 착수년월일

1981. 12. 1

2) 준공년월일

1982. 12. 15

바.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자이외의 권리 명세 (별첨)

사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(별첨)

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

학교명	소재지	자 번	지 목	지	적	소유자이외의 권 리 명 세
우 이 국민학교	도봉구 수유동	산 70-4	임	12,879 ㎡ 중	816 ㎡	없 음
		-5	"		959 ㎡	"
		산 56-24	"	12,899 ㎡ 중	8,323 ㎡	"

학교명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	적	소유자이외 의권리명적
우 미 국민학교	도봉구 수유동	526-1	대		145 평	없 음
		551-19	"		129 평	"
		-26	"	334 평중	34 평	"
		-27	"		1,782 평	"
		554-14	"		1,316 평	"
합	계	8 필			13,504 평 (4,085 평)	
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						
학교명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	소	
					유	자
우 미 국민학교	도봉구 수유동	산 70-4	임	12,879 평중 816 평	해좌동 71-4	오석선
		-5	"	959 평	석남동 94 덕양군파출소중	전수기씨
		산 56-24	"	12,879 평중 8,323 평	"	"
		526-1	대	145 평	수유동 526-1	이원철
		551-19	"	129 평	석남동 94 덕양군파출소중	전수기씨
		-26	"	334 평중 34 평	"	"
		-27	"	1,782 평	"	"
		554-14	"	1,316 평	"	"
합	계	8 필		13,504 평	(4,085 평)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46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3 호 (81. 6.26) 로 지적 승인된 당구 방학동 722 번지의 25 필지 일대의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들 도시계획법 제 25 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사업 시행허가하고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 및 서울시교육위원회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9. 24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도봉구방학동 722 번지의 22 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신문국민학교

다. 사업규모 및 면적 : 14,400 (4,356 평)

라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교육감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
1) 착수년월일 : 1981.12.15
2) 준공년월일 : 1982.12.15

바. 수용할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(별첨)

사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(별첨)

수용할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

학교명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
신문 국민학교	도봉구 방학동	722	대	349.7	없 음
		722-1	공 원	1132.4	"
		-2	"	209.7	"
		-3	"	1315.1	"
		-4	"	1445.3	"
		-5	"	782.6 중 680.8	"
		-6	"	1498.3 중 744.7	"
		-9	"	157.6	"
		-10	"	162.2	"
		-11	"	167.8	"

학교명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	적	소유자의 의권리명세
신 문 국민학교	도봉구 방학동	722-12	공 원		161.2	없 음
		-13	"		159.2	"
		-14	"		154.8	"
		-15	"		153.8	"
		-16	"		160.7	"
		-17	"		157.1	"
		-18	"		155.2	"
		-19	"		158.6	"
		-20	"		152.6	"
		-21	"		1022.6	"
		-22	"		895.9	"
		-23	대		1506.5	"
		-24	"		1793.5	"
		-25	"		1615.8 중 628.4	"
		-49	도		584.6 중 422.9	"
-50	"		351.8	"		
합	적	26 필			14,400 (4,356 평)	
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 한 판 제 인 의, 주 소, 성 명						
학교명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신 문 국민학교	도봉구 방학동	722	대	349.7	서울특별시	
		722- 1	공 원	112.4		
		- 2	대	209.7	서울특별시	
		- 3	"	1315.1		
		- 4	"	1445.6	서울특별시	
		- 5	"	630.8 (782.6 중)		

37-30 계 860 호 시

보 1981.9.24

학 교 명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		
					주 소	성 명		
신문국민학교	도봉구 방학동	722-6	대	744.7 (1498.3중)				
		-9	"	157.6	서울특별시			
		-10	"	162.2	"			
		-11	"	167.8	"			
		-12	"	161.2	"			
		-13	"	159.2	"			
		-14	"	154.8	"			
		-15	"	153.8	"			
		-16	"	160.7	"			
		-17	"	157.1	"			
		-18	"	155.2	"			
		-19	"	158.6	"			
		-20	"	152.6	"			
		-21	"	1022.6	"			
		-22	"	895.9	"			
		-23	"	1506.5	"	마포구오정동4-1	김 회 수	
		-24	"	1793.5	"	"	"	
		-25	"	628.4 (1615.8 중)	"			
		-49	도	422.9 (584.6 중)	"			
		-50	"	351.8	"	서울특별시		
		합	계	26 필		14,400 (4,356 평)	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47 호
 도시계획시설 (수도)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수도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동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시정도시계획 2.1 및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9. 24.
 서울특별시장

0. 시설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 (㎡)	비고
기정	수도	도봉구미아동산 1-17 일대	16,860	
변경		- - -	13,025	합 3,835 ㎡

* 별첨 도면표시와같음 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48 호
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264 호 (81.7.11)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제 463 호 (79.12.10)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9. 24.
 서울특별시장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 조서
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장	시점	종점	비고
시설	소로	3	6 ㎞	220 ㎞	대방동 23-1	대방동 20-9	

* 별첨 표시도면과 같음 (도면생략)
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49호</p> <p>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</p> <p>1. 서울특별시고시제 102호(80.3.24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4조와 건설부고시제 463호(79.12.10)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</p>	<p>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1. 9. 24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</p> <p>1. 사업시행지 : 서울시 강서구 동촌동 산 25-2, 산 25-29, 산 24-27</p> <p>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(학교), 화동국민학교와 화동중학교</p> <p>3. 규모 및 면적 : 총대지면적 : 33059㎡ (10,000평)</p>
--	---

<p><u>화동 국민학교</u></p> <p>대지면적 : 14190㎡ (가분할)</p> <p>건축면적 : 1138.5㎡</p> <p>연면적 : 4405.5㎡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층</p>	<p><u>화동 중학교</u></p> <p>18,869㎡ (가분할)</p> <p>1728㎡</p> <p>6813㎡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층</p>
---	---

<p>4. 사업시행자주소성명 :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서울시교육위원회 화교육감.</p> <p>5. 사업의 시행기간 : 81.9.24-</p>	<p>83.9.23</p> <p>6. 위치 및 계획 평면도 : 별첨 (도면생략)</p> <p>7. 공사설제도면 : 별첨 (도면생략)</p>
---	---

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

학교명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	
					주소	성명
하동국민학교	강서구 동촌동	산 25-29	임	25,839㎡	서대문구 홍제동 156-472	윤인술
하동중학교		산 25-2	"	4,760	강서구 동촌동 438번지	허숙
		산 24-27	"	2,460	강서구 목동 409	강윤식
합계		3필지		33,059㎡ (10,000평)	강서구 화곡동 370-55 화곡1동 마을금고 강서구 동촌동 398-21 동촌동 새마을금고	(이해관계인 별첨)

이 해 판 계 인 조 서

소재지	종 류	주 소	성 명
동촌동 산24-27	가 등 기	서대문구불광동 360-4	엄 세 용
		강남구명일동 312-219	엄 기 성
		용산구이태원동 224-50	엄 경 일
	압 류	서대문구용암동 270-11	엄 봉 용
		한강세무서	
	가 등 기	강서구화곡동 348-30	이 증 희
		강서구동촌동 397	윤 민 용
	가 등 기	도봉구미아동 791-2126	송 기 일
		강남구서초동산 90-1 우성아파트 5동 1103호	유 일 현
		관악구동작동 307 빈포아파트 75동101호	이 선 호
성북구동선동 3가 207-1		이 준 상	
강남구삼성동산 41-85 캐나리아아파트35동902호			

○서울특별시고시제 350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19 호 (81.1.19) 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되어 사업 추진중인 구산중학교에 대하여 부지내 토지조서가 누락되어 추가 고시한다.
2. 관계서류는 은평구청 도시정비과 및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시설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9.22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은평구구산동산 27번지외 21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

다. 면적 및 규모 : 18,817㎡ (5,692평)
 라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장

마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

1) 착수년월일 :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

2) 준공예정일 : '983.12.31.

바.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: 별첨 (별첨생략) 사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,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			명세: 별첨 아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제 3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: 별첨		
토 지 조 서					
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소 유 자	
				주 소	성 명
은평구 구산동	산 27	임	1,037	은평구구산동 182-5	양 회 석
	182-2	대	249	용산구한남동 11-309	백 준 기
	산 29	임	188	서대문구북아현동 130-5	최 남 석
	182-3	대	172	종로구명륜동 1가 33-83	조 기 환
	산 31	"	496	용산구이태원동 210-36	신 순 철
	182-1	"	7,119	종로구수송동 46-16	박 중 찬
	산 33	임	99	경기도양주군회천면덕정리	조 계 순
	산 34	"	4,052	은평구구산동 182-5	양 회 석
	산 35-1	"	2,202	"	"
	산 35-2	"	782	"	"
	산 37-6	"	153	"	"
	산 37-2	"	369	"	"
	182-10	대	20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
	182-6	"	22	은평구구산동 182-6	이 대 섭
	182	"	102	은평구구산동 182-5	양 회 석
	182-7	"	16	"	"
	182-8	"	68	"	"
	182-9	"	122	"	"
	182-4	"	268	중구봉래동 1가 27-2	전 영 차
	산 28	임	496	은평구갈현동 456-27	김 중 기
산 32-29	"	582	용산구한남동 11-309	백 준 기	
산 32-30	"	93	"	"	
계			18,817 (5,692 평)		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248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준공
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96 호 (74.12.29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67 호 (77.3.14) 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(학교, 관악여자상업고교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 제 57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6 조의 3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.
- 2.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9.22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산 103-10외 3필지
- 나. 사업의종류 : 도시계획사업(학교)
사업의명칭 : 관악여자상업고등학교
- 다. 시행면적 : 12,324 ㎡
- 라. 준공면적 : 12,087 ㎡ (지적측량 성과도에 의함)
- 마. 사업시행자 : 주소, 성명 : 관악구 봉천동 622-59

재단법인관악학원

이사장 송종숙

바. 사업의착수 : 착수 77.4.20

및 준공 : 준공 81.9

사. 준공내용 : 편침지식측량성과도

및 실제도서와 같음.

※ 준공도면계재생략

사 령

◎ 1981년 9월 21일자 공고 제 248 호

신 규 김 전 현

지방별정직 7 급상당 (화성방지도원) 에 임함.

6 호봉을 급함.

운정과안무를 명함.

신 규 천 성 우

지방별정직 7 급상당 (화성방지도원) 에 임함.

5 호봉을 급함.

강서구근무를 명함.

신 규 김 영 모

지방별정직 6 급상당 (지대장) 에 임함.

12 호봉을 급함.

한강안전관리대근무를 명함.

<p>명제 376 호 공 상 석 동대문구 4호봉 지방토목기사보</p> <p>◎ 1981년 9월 24일자 명제 377 호 연 토 과 김 대 처 지방행정주사보</p> <p>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</p>	<p>보 건 경 정 과 장 영 더 지방행정주사보</p> <p>제 62 회 전국채전준비요원에 임함. (81.10.16 - 81.10.31)</p> <p>동작구 녹지 과 한 대 수 지방농림기사보</p> <p>제 62 회 전국채전준비요원에 임함. (81.10.16 - 81.10.31)</p> <p>◎ 1981년 9월 26일자 명제 382 호</p>
<p>명제 378 호 영등포구민방위국 서 기 관 김 창 신</p> <p>제 62 회 전국채전준비요원에 임함. (81.10.16 - 81.10.31)</p> <p>지하철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 성 용 락</p>	<p>송구민방위과 지방행정사무원 김 승 용</p> <p>지하철공사 추진요원에 임함. (81.9.26 - 81.12.31)</p> <p>성북구삼전 2 동 지방행정주사 박 용 호</p> <p>지하철공사 추진요원에 임함. (81.9.26 - 81.12.31)</p> <p>서대문구저무과 지방행정주사 이 지 수</p>
<p>제 62 회 전국채전준비요원에 임함. (81.10.16 - 81.10.31)</p> <p>강동구총무과 지방행정주사 김 용 덕</p> <p>제 62 회 전국채전준비요원에 임함. (81.10.16 - 81.10.31)</p>	<p>지하철공사 추진요원에 임함. (81.9.26 - 81.12.31)</p> <p>지하철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보 윤 철 준</p> <p>지하철공사 추진요원에 임함. (81.9.26 - 81.12.31)</p> <p>선 을 특 립 시</p>